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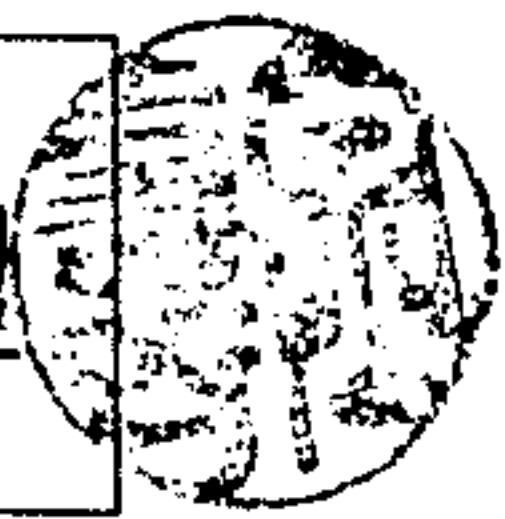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29 호
의 결 연 월 일	2000 년 11월 27일 제 10 회

의 결 사 항
결안가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연 월 일	2000. 11. 27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11. .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소관부서 : 재 무 과)

1. 제안이유

- 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군세과세표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군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4. 근거법령

-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법률 제16,928호, 2000. 7. 29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 충청북도 재무13400 - 1951(2000. 8. 17)호로 시달

붙임 1.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2.신 · 구조문대비표 1 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 안

보은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군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를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u>이의신청의 심의·의결</u> 및 <u>과세표준의 운영</u> 기타 군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⑥ (생략)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	--- <u>이의</u>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 -----.
<신 설>		제9조의2(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 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편 재 무

보은군세조례

보은군세조례

제정(1973. 6. 20 조례 제 288호)
 개정(1974. 2. 28 조례 제 312호)
 개정(1975. 3. 17 조례 제 342호)
 개정(1975. 7. 8 조례 제 356호)
 개정(1977. 2. 15 조례 제 432호)
 개정(1977. 4. 10 조례 제 453호)
 개정(1979. 1. 11 조례 제 517호)
 개정(1979. 3. 12 조례 제 536호)
 개정(1979. 4. 26 조례 제 547호)
 개정(1979. 11. 5 조례 제 570호)
 개정(1980. 1. 28 조례 제 583호)
 개정(1980. 3. 17 조례 제 596호)
 개정(1982. 2. 10 조례 제 710호)
 개정(1982. 5. 13 조례 제 742호)
 개정(1983. 4. 30 조례 제 804호)
 개정(1983. 12. 30 조례 제 837호)
 개정(1984. 5. 28 조례 제 882호)
 개정(1985. 1. 18 조례 제 903호)
 개정(1985. 3. 21 조례 제 910호)
 개정(1987. 1. 16 조례 제 992호)
 개정(1988. 5. 13 조례 제1071호)
 개정(1988. 6. 8 조례 제1079호)
 개정(1989. 1. 16 조례 제1133호)
 개정(1989. 3. 10 조례 제1159호)
 개정(1989. 6. 20 조례 제1206호)
 개정(1989. 12. 29 조례 제1233호)
 개정(1990. 8. 29 조례 제1263호)
 개정(1990. 12. 31 조례 제1283호)
 개정(1991. 12. 31 ~~조례 제1283호~~ 조례 제1321호)
 개정(1995. 4. 19 조례 제1421호)
 개정(1995. 6. 29 조례 제1427호)
 개정(1995. 12. 30 조례 제1439호)
 개정(1996. 6. 26 조례 제1458호)
 개정(1998. 1. 8 조례 제1524호)
 개정(1998. 5. 6 조례 제1535호)
 개정(1999. 6. 7 조례 제1577호)
 개정(2000. 5. 10 조례 제1622호)

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시군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시(군)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군)세심의위원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부과징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특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군사부의 위임조례에 정하야 읍·면장(군의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천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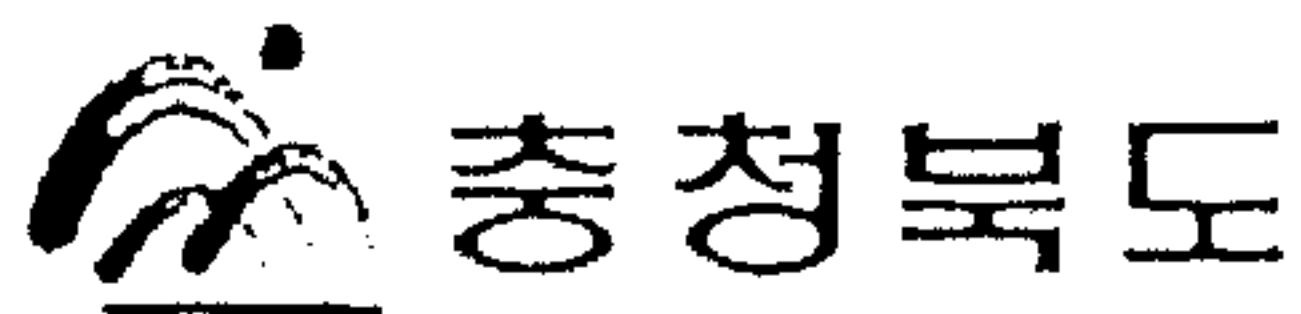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



문서취급 : 일반문서

우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89 / 전화(043)220-2614 행2614 / Fax 2619
등관 1층 재무과 과장 민정일 / 세정담당사무관 권영옥 / 담당자 이강근

문서번호 재무 13400 - 1951
시행일자 2000. 8. 17 (준영구)
공개여부 공 개
수 신 더 01 - 12
참 조 세무(세정·재무·재정
경제)과장

선람	과장	지시	
접	일 자 각	결재	담당
수	번 호	공람	
처 리 과	재무과		
담 당 자	최상면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시(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달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법률제16,928호, 2000. 7. 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군)세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시군에서는 개정(안)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붙 임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전결 자치행정국장 박채식

○○시(군)세 조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법률 제16,928호, 2000. 7. 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군)세 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시(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군)세 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 시(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중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시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를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시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시(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회의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시군세심의위원회) ①시군세에 관한 <u>이의신청의 심의·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u> 기타 시군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⑥ (생략)	제9조(시(군)세심의위원회) ①--- ----- <u>이의</u> <u>신청을 심의·의결하기</u> ----- -----. ②~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조의2(시(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시(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